

공사비영향요인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id
		명	설명	
시설물 유형	공공청사	일반청사	연면적 10,000㎡ 미만 공용청사(경찰서, 우체국 포함)	0
시설물 유형	공공청사	대형청사	연면적 10,000㎡ 이상 공용청사(경찰서, 우체국 포함)	1
시설물 유형	초중고등학교	일반형초중고	운동장 및 교실 중심의 기본 시설로 구성된 학교	2
시설물 유형	초중고등학교	복합형초중고	기본 시설 외에 부속시설(수영장, 실험실, 실내체육관)이 포함된 학교	3
시설물 유형	대학교	강의형대학교	강의실 중심의 기본시설로 구성된 학교	4
시설물 유형	대학교	복합형대학교	기본 시설 외에 부속시설(수영장, 실험실, 실내체육관)이 포함된 학교	5
시설물 유형	수련시설	일반형수련시설	숙박 및 업무용 등 기본시설로 구성된 시설	6
시설물 유형	수련시설	복합형수련시설	기본시설 외에 부속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이 포함된 시설	7
시설물 유형	도서관		업무용, 강의실 중심 시설	8
시설물 유형	체육시설	야외형체육시설	야외 시설 중심의 체육시설	9
시설물 유형	체육시설	복합형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중심의 체육시설	10
시설물 유형	전시시설	일반형전시시설	업무 및 전시 시설	11
시설물 유형	전시시설	특수형전시시설	전시효과를 위한 영상설비 등이 포함된 업무 및 전시 시설	12
시설물 유형	의료시설	일반형의료시설	연면적 3,000㎡ 미만 병원시설	13
시설물 유형	의료시설	중규모형의료시설	연면적 3,000㎡ 이상~5,000㎡ 미만 병원시설	14
시설물 유형	의료시설	대형의료시설	연면적 5,000㎡ 이상 병원시설	15
시설물 유형	연구소	일반형연구소	업무 중심의 연구시설	16
시설물 유형	연구소	실험용연구소	농업용, 화학용 등 실험실이 포함된 시설	17
시설물 유형	연구소	첨단연구소	바이오, 원자력(방사선) 등 첨단 실험실이 포함된 시설	18
시설물 유형	공장	일반형공장	일반 업무용 공장	19
시설물 유형	공장	특수형공장	업무용 공장외에 제조를 위한 각종 특수 설비가 포함된 시설	20
시설물 유형	창고	일반형창고	일반 창고	21
시설물 유형	창고	특수형창고	장기 보관을 위한 냉난방이 설치가 완비된 창고	22
시설물 유형	기숙사		숙박시설	23
시설물 유형	노유자시설		교육, 업무, 숙박 등을 포함한 시설	24
시설물 유형	복지시설		근린시설 및 업무시설을 포함한 시설	25
시설물 유형	기타시설		위의 시설물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26

공사비영향요인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id
		명	설명	
철거공사 포함여부	철거공사 포함		기존 부지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27
철거공사 포함여부	철거공사 미포함		기존/신축 부지에 시설물만 공사	28
지역구분	혼잡지역(특수)		공사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높고, 특수지반공법 적용 등에 따라 공사수행환경이 복잡한 지역	29
지역구분	비혼잡지역(일반)		공사와 관련된 현장주변의 장애요인이 적고 공사수행환경이 복잡하지 않은 지역	30
지역구분	산간도서지역(특수)		자재조달 및 인력수급 난이도가 발생하는 지역	31
지반공사	지반형태	일반지반	터파기 등 기초공사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지반	32
지반공사	지반형태	특수지반	매립지반으로 토사암밀공법 등이 필요한 지반, 연약지반으로 토질지환공법이 필요한 지반. 산악, 해변가, 급경사 지역 등 지정공사가 어려운 지반	33
지반공사	흙막이 공사	흙막이공사가 있는 경우	.	34
지반공사	흙막이 공사	흙막이공사가 없는 경우	.	35
구조형식	철골조		주요 구조부가 철골조로 구성된 경우	36
구조형식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요 구조부가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구성된 경우	37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조		주요 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로 구성된 경우	38
구조형식	기타		주요 구조부가 조적, 블록, 목조로 구성된 경우	39
층수	지하	지하층 없음	지하층수가 없는 경우	40
층수	지하	지하 1층	지하층수가 지하 1층인 경우	41
층수	지하	지하 2층	지하층수가 지하 2층인 경우	42
층수	지하	지하 3층 이하	지하층수가 지하 3층 이하인 경우	43
층수	지상	1~4층 이하	지상층수가 지상 4층 이하인 경우	44
층수	지상	지상 5층 이상	*건축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	45
층수	지상	지상 30층 이상	*건축법 제2조(정의)19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구역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46
층수	지상	지상 50층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15 :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47
내진등급	내진설계특등급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48
내진등급	내진설계1등급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49
내진등급	내진설계2등급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 중요도 (2)및(3)에 해당 하는 건축물	50

공사비영향요인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id
		명	설명	
건축물인증	신재생에너지	대상시설 해당 있음	해당 시설물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상인 경우	51
건축물인증	신재생에너지	대상시설 해당 없음	.	52
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주거용 60kwh/m3년미만, 비주거용 80kwh/m3년미만	53
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1++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주거용 60~150kwh/m3년미만, 비주거용 80~260kwh/m3년미만	54
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 4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주거용 150~270kwh/m3년미만, 비주거용 260~450kwh/m3년미만	55
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	5등급 ~ 7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주거용 270~420kwh/m3년미만, 비주거용 450~700kwh/m3년미만	56
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	해당 없음	.	57
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녹색건축 그린 1등급 주거용 74점, 비주거용 80점 이상	58
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	우수	녹색건축 그린 2등급 주거용 66점, 비주거용 70점 이상	59
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	우량	녹색건축 그린 3등급 주거용 58점, 비주거용 60점 이상	60
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	일반	녹색건축 그린 4등급 주거용 50점, 비주거용 50점 이상	61
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	해당 없음	.	62
건축물인증	BF 인증	해당 있음	BF(barrier free) 인증 만점 기준 70% 이상	63
건축물인증	BF 인증	해당 없음	.	64
건물외형	정형구조(일반)		비정형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정형 구조물	65
건물외형	비정형구조(특수)		건물 외피면적의 50% 이상 곡면 또는 면외이긋남, 45°이상의 기울기 등 비정형적으로 디자인된 구조물	66
외부 마감자재 등급	고급		외산대리석 또는 시스템 유리 등 고가의 마감재가 외피면적의 50%이상 사용된 경우	67
외부 마감자재 등급	일반		고급 등급 외 일반으로 분류	68
냉난방 방식	개별 방식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개별 공간에서 공급 관리하는 방식	69
냉난방 방식	중앙 집중 방식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공급 관리하는 방식	70